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0. 1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10. 1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가. 제안이유

2025년 상반기 운영 예정인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2) 필요성

-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 (1)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인력 운용 관리 일체
- (2)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

4) 민간위탁기간 : 2025. 4. ~ 2028. 3.(3년)

5)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 위탁

6) 위탁시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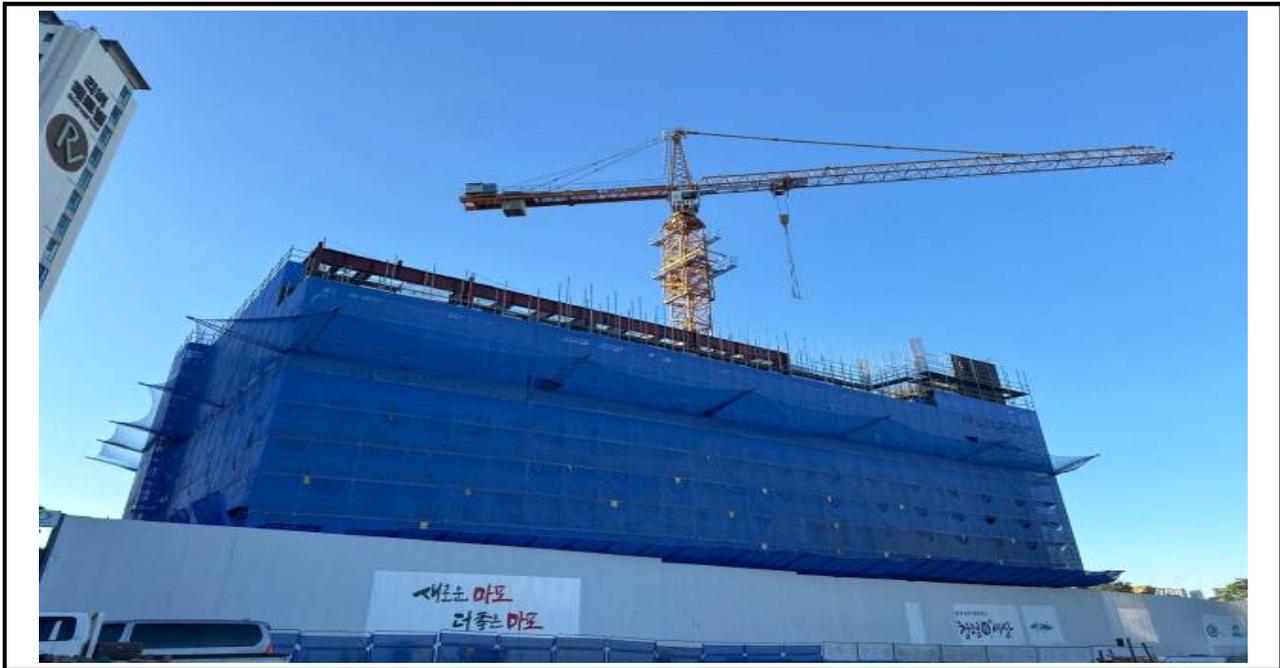
- (1) 위 치: 마포구 당인동 1-30외 2필지
- (2) 시설규모: 연면적 7,693.65㎡ (지하1층, 지상5층)
- (3) 층별현황

층별	면적(㎡)	시설내역
옥상	-	전망대·천문대
지상	5층	전망테라스(한강 및 광장), 편의점
	4층	다목적 체육관
	3층	다목적실, GX룸, 사무실
	2층	피트니스 사우나
	1층	만남의 광장, 카페·판매시설, 사무실, 관리사무실, 주차장(45대)
지하 1층	1877.32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지하주차장(27대)

(4) 위치도



(5) 현장사진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 소요예산 : 2,383,855천원
- (2) 산출근거

시설명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2,383,855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2,383,855	- 인건비 1,004,340천원 -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비 1,130,373천원 - 기타운영예산 249,142천원	구비 100%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문적·능률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
- (2)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을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9) 민간위탁 추진일정

- (1) '24.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 수립
- (2) '24. 12월 : 수탁기관 선정
- (3) '25. 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4) '25. 4월 : 주민편익시설 준공 및 위탁 운영 개시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본 동의(안)은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1)에 따라 사전에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3.3.9.>

입.

-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마포구 당인동 1-30외 2필지)은 연면적 7,693.65㎡(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피트니스 사우나, 다목적실, GX룸, 다목적체육관, 전망테라스, 전망대 및 천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 4월 동 시설의 준공 이후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인 바, 시설형 위탁²⁾으로, 총 사업비는 민간위탁금 23억 8,385만 5천 원임.
- 이에,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³⁾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①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인력 운용 관리 ②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등으로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위탁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시설형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마포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6.>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살펴볼 때,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조례에서 정한 민간 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탁기간도 조례 규정인 3년 이내⁵⁾를 준수하는 등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취지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및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점에서 민간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양질의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민간위탁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체육시설 이용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협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붙임 1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구의회 동의)

구 분	신규위탁(공개모집)	신규위탁(수의협약)	비고
① 사전조사와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필요성과 기대효과, 운영사례, 수탁가능업체 등 사전 조사 민간위탁(시행사무)의 적정성 사전 검토		조례 §4
↓	↓		
② 추진계획 수립	법적근거, 위탁사무 세부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	↓		
③ 구의회 동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구의회 동의</div>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조례 §6①)		조례 §5
↓	↓		
④ 예산 편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예산 편성</div>		조례 §6
↓	↓		
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div>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수의협약 근거·사유 심의	조례 §7
↓	↓		
⑥ 수탁기관 선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div>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	조례 §11
↓	↓		
⑦ 위·수탁 협약체결	위탁 협약 체결(위탁사실 공고)		조례 §13
↓	↓		
⑧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위탁사무와 시설 인계인수, 시범운영,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		조례 §14, 20
↓	↓		
⑨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	▶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지도·감독: 필요 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한해 매년 2회(반기별 1회) 이상 ▶ 처리상황의 감사: 필요 시 ▶ 성과평가: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조례 §14, 18, 2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체육시설 관리·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경기대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6>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3.3.9.>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신설 2021.5.6.>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1. 인적·물적 현황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사고 현황
 6. 성과평가결과서
 7.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③ 구청장은 구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재계약·재위탁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재계약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